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4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문진석·김문수·박홍배

이재관 · 김영환 · 정준호

윤종군 • 민홍철 • 박정현

홍기원 · 이재강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 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 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시설"을 "그 시설 등"으로,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 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43호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		
	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u>①</u>		
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 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략) <u><신 설></u>

<신 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 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 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

1. ~ 3. (현행과 같음)
3의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
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
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 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
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u>나</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u>
<u>그 시설 등</u>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u>할 수 있다</u> .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신 설> <u>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u> <u>하여 필요한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 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 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